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0.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안은 2021.9.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9.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656호).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중복 선정 금지,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나.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라. 학술용역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를 강화함.(안 제12조)

마. 학술용역 결과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토록 함.
(안 제1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8. 27 ~ 2021. 9. 1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촉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하였음. 또한 학술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중복 선정 금지,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 내용

○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

- 제5조제1항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
- 제6조의2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과 기피를 규정하고 있음.
- 제9조제3항은 주관부서 장의 유사과제 반복 수행을 방지하고 있음.
- 제12조에는 공무원의 책임 관리 강화를 위해 학술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음.
-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학술용역의 공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외부연구용역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추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음.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촉위원을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심의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였음.

○ 유사과제 반복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을 거치도록 한 것, 학술용역실명제를 통해 담당자의 책임 관리를 강화한 것은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행의 질을 높이는 개정안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고드림.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생 략)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생 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 ④ (생 략)